2005년 제38차 카타르국적법 요약문

국왕의 결정에 따라 국적취득신청제출일 이전에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카타르에 거주하고 합법적인 생계수단이 있으며, 평판이 훌륭하고 품행이 단정하고, 이전에 카타르 또는 외국에서 명예 및 안전을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지 아니하고, 아랍어에 능통한 외국인에 대하여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. 카타르국적신청인이 국적허용이전에 사망한 후 그의 신청이 수용된 경우 그의 미망인의 요청과 내무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미망인과 그의 미성년의 자에게 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국적취득자의 국적취득일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득자와 카타르에 거주한 국적취득자의 처(妻)에 대하여서도 취득자 다음으로 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. 카타르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유망한 과학적 재능을 가진 특출한 학생에 대하여도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. 카타르인과 혼인한 여성이 내무부장관에게 카타르국적취득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혼인관계가 통지일로부터 5년 간 지속된 경우 카타르인으로 본다.

카타르국적은 1년에 50명 이상에게 허용하지 아니한다. 카타르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 시 제1심법원의 판사 앞에서 맹세를 하여야 한다. 여권 또는 신분카드는 카타르국적보유에 대한 증거로 보지 아니한다. 1961년 제2차 카타르국적법은 폐지한다.